

# 국 가 인 권 위 원 회

## 침해구제제1위원회

### 결 정

사 건 17진정0449100 · 17진정0975800 · 17진정1069900 (병합)  
유치장에서의 과도한 경찰장구 사용

진 정 인 1. 이○○  
2. 김○○  
3. 최○○

피진정인 별지 기재 1 목록과 같음

### 주 문

경찰청장에게, 유치장에서의 과도한 경찰장구 사용과 관련하여 재발방지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권고한다.

1. 보호유치실에 자해 방지 및 방음 등 안전시설을 제대로 갖추기 바람
2. 경찰 장구의 사용으로 불필요한 신체적 고통이나 상해를 유발하거나 인간의 존엄에 반하지 않도록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87조, 제98조 제1항에 따라 안전하고 효과적인 보호장비를 구비하고, 그 사용기준을 마련하기 바람

3. 법령에서 정한 방법으로 수갑과 포승을 사용하도록 전국 유치인보호관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교육을 실시하기 바람
4. 호송 이외의 사유로 유치장에서 경찰장구를 사용하는 경우 ‘유치장 경찰장구 사용심사부’를 제작하여 기록을 유지하기 바람

### 이 유

#### 1. 진정요지

가. 피진정인 1, 2, 3은 2017. 4. 16. ~ 18. ○○경찰서 유치장에 수용 중인 진정인 1에게 뒷수갑을 채운 상태에서 다리에 포승을 하는 등 3일간 경찰장구를 반복하여 사용하였다.

나. 피진정인 4, 5, 6은 2017. 10. 4. ○○경찰서 유치장에 수용 중인 진정인 2에게 뒷수갑을 채운 상태에서 포승으로 손과 발목을 묶어 서로 연결하면서 다리를 뒤로 당겨 묶었다. 이로 인하여 진정인 2는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견관절 회전근 부분 파열상을 입었다.

다. 피진정인 7, 8, 9, 10은 2017. 10. 17.~21. ○○경찰서 유치장에 수용 중인 진정인 3에게 뒷수갑을 채우고 포승으로 상, 하체를 연결하여 묶었다. 이로 인하여 진정인 3은 몸에 멍이 드는 상해를 입었다.

#### 2. 당사자의 주장

가. 진정인

진정인 1, 3은 위 진정요지와 같다. 진정인 2는 주취상태에서 소란행위를 하여 이를 제지하기 위한 방법으로 부득이하게 경찰장구를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이해하고 있다. 하지만 그 사용 정도가 과도하여 상해를 입힐 정도에 이른 것에 대하여 조사를 원한다.

#### 나. 피진정인

##### 1) 피진정인 1, 2, 3

2017. 4. 16. 진정인 1이 관공서 주취소란으로 현행범 체포되어 반 깃스 상태로 ○○경찰서 유치장에 입감되었는데, 고함을 지르면서 욕설을 하고, 유치실 창살을 발로 차고, 유치실 벽면에 부착된 종이 거울을 뜯으며 소란을 피웠으며, 화장실 출입문을 발로 차서 출입문을 파손하려고 하고, 배식구에 발을 넣어 자해하려고 하는 등의 행위를 반복하여 자해 및 기물 파손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수갑을 채우고 포승을 실시하였다.

진정인 1이 발로 창살을 차서 움직이지 못하도록 발목에 포승줄을 묶은 후 상체 방향으로 당겨서 연결하거나 또는 다리를 뒤고 접어 포승줄로 상체와 연결하는 방법으로 포승을 실시하였는데 포승하는 방법은 사이버교육을 통해 익히거나 동료 유치인보호관들로부터 배운 방법으로 실시하였다.

##### 2) 피진정인 4, 5, 6

2017. 10. 4. 진정인 2가 가정폭력으로 현행범 체포되어 ○○경찰서 유치장에 입감되었는데, 주취상태로 욕설을 하면서 고함을 지르고 피진정인 5의 뺨 등을 때리며 유치실 밖으로 나가려고 하고, 유치실 창살을 발로 차고 머리를 바닥 등에 들이박는 행위를 계속하여 헤드기어를 씌우고 수갑과 포승을 실시하였다.

진정인 2가 발로 창살을 차서 움직임이 최소화 되도록 다리를 뒤로 접어

상체와 연결시키는 방법으로 포승을 실시하였는데 포승하는 방법은 사이버교육을 통해 익히거나 선임 유치인보호관들로부터 배운 방법으로 실시하였다.

##### 3) 피진정인 7, 8, 9, 10

2017. 10. 17. 진정인 3이 공무집행방해 등으로 현행범 체포되어 ○○경찰서 유치장에 입감되었는데, 주취상태로 욕설을 하면서 바닥에 드러누워 5차례 구토를 약간 하고, 콘크리트 바닥에 머리를 박았으며, 이를 제지하는 피진정인 7의 몸을 잡고 흔들고, 흥분한 상태에서 유치실 문을 발로 차는 행위를 계속하여 자해 방지 및 유치장 질서 유지를 위하여 헤드기어를 씌우고 수갑과 포승을 실시하였다.

진정인 3이 발로 유치실 문을 차서 유치실 문을 차지 못하도록 다리를 뒤로 접어 상체와 연결시키는 방법으로 포승을 실시하였는데 포승하는 방법은 사이버교육을 통해 익히거나 선임 유치인보호관들로부터 배운 것이며, 하체승은 포승줄로 고리를 2개 만들어 양 발목에 걸어서 수갑에 연결하는 방법으로 실시하였는데 묶는 방법을 잘 몰라서 위해 행위를 제지하는 정도로 상식선에서 묶었다.

#### 3. 관련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 4. 인정사실

가. 진정요지 가항

1) ○○경찰서 유치장 CCTV 영상기록, 유치인보호관 근무일지 등의 자료에 의하면, 진정인 1이 유치 기간(3일)중에 유치실 창살을 발로 차는 등의 소란행위를 하자 이를 제지하기 위하여 피진정인 1, 2, 3이 진정인 1에게 뒤통수갑을 하고

엎드린 상태에서 발목과 수갑을 포승줄로 연결하고 다리를 엉덩이 방향으로 접는 방법으로 총 6회에 걸쳐 수갑장구를 반복적으로 사용하고, 머리를 벽에 부딪치자 진정인 1의 머리보호를 위해 체육관용 헤드기어를 착용하였다.

2) 진정인 1의 입·출감지휘서 및 유치인보호관 근무일지에 따르면, 2017. 4. 16. 16:40경 진정인 1이 왼쪽 종아리 부위 통증을 호소하여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같은 달 17. 10:15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다.

#### 나. 진정요지 나항

1) ○○경찰서 유치장 CCTV 영상기록 및 유치인보호관 근무일지에 따르면, 진정인 2가 소리를 지르고, 경찰관을 밀치는 등의 유형력을 행사하고, 유치실 창살을 발로 차는 소란행위를 하자 이를 제지하기 위하여 피진정인 4, 5, 6이 앞수갑을 하고 앉은 상태에서 포승줄로 양쪽 어깨를 교차(X자모양)하여 묶는 방법으로 상체승을 하고, 뒷수갑을 하고 바닥에 엎드린 상태에서 발목과 수갑을 포승줄로 연결하여 다리를 엉덩이 방향으로 접는 방법으로 약 2~3시간에 걸쳐 수갑장구를 사용하고, 머리를 바닥에 부딪친다는 이유로 진정인 2의 머리보호를 위해 체육관용 헤드기어를 착용하였다.

2) 진정인 2의 출감지휘서 및 의료수진부에 따르면, 진정인 2가 2017. 10. 4. 19:00, 같은 달 7. 23:05 병원 진료를 받기 위해 각 출감한 사실, 2017. 10. 4. 19:00 진료 시 '진정인이 복통 호소, 진단 결과 손등 부어 있어 소독 등 치료'를 받은 사실, 같은 달 7. 23:05 진료 시 '진정인이 손에 감각이 없음, 진단결과 손목부분의 염좌 및 긴장, 다발성 염좌 추정'된다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3) 진정인 제출 의사소견서에 따르면, 진정인 2가 2017. 10. 7. 경찰관 보호 하에

내원하여 우견관절 통증으로 MRI검사를 시행하고, 우견관절 회전근 부분 파열' 진단을 받았다.

#### 다. 진정요지 다항

○○경찰서 유치장 CCTV 영상기록 및 유치인보호관 근무일지, 피진정인 진술에 따르면, 진정인 3이 욕설을 하고, 유치실 문을 발로 차는 등의 소란행위를 지속적으로 하자 이를 제지하기 위하여 피진정인 7, 8, 9, 10이 진정인 3에게 뒷수갑을 하고 포승을 오른발에 둘러 수갑과 연결하여 다리를 엉덩이 쪽으로 반절 접어 올려 묶는 방법으로 하체승을 실시하여 약 2시간에 걸쳐 수갑장구를 사용하고, 진정인 3이 머리를 바닥에 부딪친다는 이유로 머리보호를 위해 체육관용 헤드기어를 착용하였다.

라. 경찰인재개발원, 중앙경찰학교 제출 자료 및 '위해성 경찰장비 사용'에 관한 경찰청 사이버 교육 내용에 따르면, 경찰인재개발원의 유치인보호관 대상 교재와 경찰청 사이버 교육에서 상체승을 하는 포승 방법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으나, 하체승을 하는 포승 방법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다.

마. 경찰청의 '수갑 사용 등 지침'에서는 유치인을 호송하는 경우 앞수갑 및 상체승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하체승에 대한 규정은 없다.

바. 2012. 12. 14. 경상남도지방경찰청에서 관할 관서에 하달한 공문(유치인 보호를 위한 보호장비 활용 지시)에 따르면, 하체승의 사용방법에 대한 설명이 있다.

사. ○○경찰서 유치장의 경우 보호유치실 전면부는 아크릴과 창살로 되어 있

고, ○○경찰서 유치장의 경우 보호유치실 화장실 출입문 경첩이 노출되어 있으며, 두 경찰서 유치장 모두 보호유치실 바닥에 충격을 완화하는 장치가 없고 방음이 완전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아. ○○경찰서 및 ○○경찰서에서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0조에서 정한 머리보호장비가 아닌 체육관용 헤드기어를 사용하고 있다.

## 5. 판 단

### 가. 기본원칙

「헌법」 제12조는 국민의 신체의 자유와 안전을 보장하고 있고, 같은 법 제37조 제2항은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경찰관직무집행법」 제10조 및 제10조의2에서는 자기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에 대한 방호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 필요한 한도에서 경찰장구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한편,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경찰장비(이하, '위해성 경찰장비')를 사용할 때에는 필요한 안전교육과 안전검사를 받아야 하고, 경찰장비를 함부로 개조하거나 일반적인 사용법과 달리 사용함으로써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0조 및 제171조에서는 규격에 맞지 않는 보호 장비를 사용해서는 아니 되며,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보호 장비를 사용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고, 경찰청 훈령인 「피의자 유치 및 호송 규칙」 제22조에서는 유치인이 자살·자해·위해의 우려가 있거나 시설 또는 물건을 손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수갑과 포승을 사용할 수 있으나 징벌이나 고통을 가할 목적으로 수갑과 포승을 사용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포승, 수갑 등을 사용한 신체의 결박은 자연스러운 거동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매우 불편하게 만들 뿐 아니라 종종 심리적 위축까지 수반하며 장시간 계속될 경우 심신에 고통을 주거나 나아가 건강에 악영향을 끼치고 사용하는 방법에 따라서는 인간으로서의 품위에까지 손상을 줄 수 있으므로 이러한 장구를 사용한 신체의 자유의 추가적 제한 또한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른 기본권 제한의 한계를 지켜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sup>1)</sup>

종합하여 보면, 수갑·포승 등 경찰장구의 사용은 신체에 직접적인 제한을 가하여 신체에 심각한 위해를 끼치거나 상당한 고통을 안겨주고 나아가 인간으로서의 품위에 회복할 수 없는 손상을 줄 수 있으므로, 장구 사용이 필요한 경우라 하더라도 법령에서 허용하는 장구에 한하여 적법한 사용 방법에 따라 최소한으로 사용해야 할 것이다.

나. 이 사건 경찰 장구의 사용이 적법절차에 부합하는지 여부

유치장 CCTV 영상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진정인 1, 2, 3은 유치장 수용 중

1) 헌법재판소 2005. 5. 26 자 2004헌마49 결정

헤드기어를 착용하고 앞수갑 또는 뒷수갑을 한 상태에서 포승줄로 묶인 사실이 있는데, 이와 같은 경찰 장구의 사용이 적법절차에 부합하였는지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1) 본 건 ‘헤드기어’가 법령에서 정한 규격에 맞는지 여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87조에 따르면 경찰관서에 설치된 유치장은 교정시설의 미결수용실로 보아 이 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98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0조 제1항에서는 보호장비의 종류와 규격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헤드기어’는 체육관에서 사용하고 있는 운동보조기구로 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머리보호장비의 규격에 맞지 않는다.

이처럼 규격에도 맞지 않는 헤드기어를 머리보호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이유는 위 법률 제87조에도 불구하고 머리보호장비 등을 보급하기 위한 별도의 경찰청 지침도 마련되어 있지 않고 실제로 보급도 되지 않기 때문에 주취 또는 환각상태에 있는 유치인이 유치실 바닥이나 창살에 머리를 박는 자해 사례가 발생할 경우 일선 기관에서 궁여지책으로 운동용 헤드기어라도 필요하기 때문이다.

2) 법령에서 정한 사용방법에 따라 수갑과 포승을 사용하였는지 여부

유치장 CCTV 영상에 따르면, 진정인 1, 2, 3은 뒷수갑을 하고 바닥에 엎드린 상태에서 발목과 수갑이 포승줄로 연결되어 다리가 엉덩이 방향으로 접힌 상태로 1시간 내지 2시간가량 있었고, 진정인 1은 앞수갑을 하고 바닥에 앉아 있는 상태에서 한 개의 포승줄로 양쪽 팔과 한쪽 발목이 묶인 상태로, 다른 하나의 포승줄로 허리와 오른쪽 어깨 부위가 묶인 상태로 1시간가량 있었으며,

진정인 2는 앞수갑을 하고 앉은 상태에서 포승줄로 양쪽 어깨를 X자 형태로 묶인 상태로 있었던 것이 확인된다.

피진정인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8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9조에 따라 상·하체승 포승을 실시하였다고 주장하는데, 위 시행규칙에 따르면, 상체승과 하체승 모두 손을 앞으로 모은 상태에서 포승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에서와 같이 수갑을 허리 뒤로 채운 상태에서 포승줄을 발목에 감아 허리 부분으로 당겨 엉덩이 방향으로 다리가 접혀 있어서 몸을 움직이지 못하게 하거나 또는 앉은 상태에서 포승줄로 팔과 발목을 함께 연결하여 일어나지 못하도록 하거나 또는 포승줄로 양쪽 어깨를 교차하여 묶는 방식은 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자의적인 포승방법으로 유치인 보호라는 경찰 장구 사용 목적을 넘어서서 상당한 신체적 고통을 안겨줄 뿐 아니라 인간으로서 가져야 할 최소한의 존엄에도 부합하지 않는 비인도적인 장구사용이라 할 것이다.

다. 개선 필요성

1) 보호유치실 환경 개선

○○경찰서 보호유치실의 경우, 보호유치실 전면부가 아크릴판과 창살로 되어 있고, ○○경찰서 보호유치실의 경우에는 화장실 출입문 경첩 등이 노출되어 있으며, 특히 ○○경찰서와 ○○경찰서의 보호유치실 바닥은 별다른 충격 완화 장치가 없어 유치인의 자해 방지를 위한 안전장치가 미흡하고, 보호유치실 내 방음설비 또한 완전하지 아니하여 보호유치실에서 소리를 지르는 경우 다른 유치인의 생활에 상당한 방해로 주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교도소 진정실 또는 보호실을 참고하여 보호유치실의 전면부 및 바닥 등에 보호장치를 마련하고 방음시설을 제대로 갖추는 등의 시설개선이 요구된다.

## 2) 유치장 경찰 장구의 개선

○○경찰서, ○○경찰서 유치장에는 주취 또는 환각상태에서 자해를 하는 유치인을 보호하기 위한 보호침대, 보호의자, 규격에 맞는 머리보호장비 등이 구비되어 있지 않다.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98조 제1항에서 보호장비의 종류로 보호침대, 보호의자, 머리보호장비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일선경찰서 유치장에 보급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다보니 유치인의 소란 및 자해를 억지하기 위해서 수갑과 포승을 과도하게 사용할 수밖에 없었고, 그로 인해 유치인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에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실제로 이 사건 진정인 1은 한쪽 발목에 깁스를 한 상태에서 약 9시간 동안 수갑, 포승 또는 헤드기어를 반복적으로 사용 당하였고, 진정인 2는 수갑, 포승 또는 헤드기어를 약 3시간 반복적으로 사용 당한 후 우측 견관절 부분 파열이라는 진단을 받은 사실이 있으며, 진정인 3은 약 2시간 동안 수갑, 포승 또는 헤드기어를 한 상태에서 여러 차례 구토를 하였던 점 등으로 살펴보건대, 수갑 및 포승의 사용만으로 소란, 난동, 자해행위 등을 제지하기 어렵고, 오히려 계속적인 수갑과 포승의 사용으로 유치인에게 신체적 고통과 상해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 98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호장비 중에서 경찰서 유치장에 구비되어 있지 아니한 보호장비를 즉시 구비하고, 유치장에 적합한 사용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 3) 포승 사용방법에 대한 교육의 필요성

피진정인들의 진술 및 유치장 CCTV영상에서 보는 바와 같이, 상체승을 하는

경우 포승줄을 어깨에 감는 등 법령에서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하거나 특히 하체승의 경우에는 피진정인마다 포승의 순서나 방법이 각기 다르다.

한편, 경찰청 사이버 교육 및 경찰인재개발원의 교재 등에서는 상체승을 하는 포승 방법을 설명하고 있으나, 하체승의 경우 2012. 12. 14. 경상남도지방경찰청에서 관할 관서에 하달한 공문 외에는 경찰청 사이버 교육, 경찰인재개발원의 유치인보호관 대상 교재, 경찰청의 수갑 등 사용지침에서 하체승의 사용 방법에 대하여 달리 설명하고 있지 아니하고, 피진정인들 또한 선임 유치인보호관들로부터 관행적인 포승 방법을 습득하고 있는 실정이며, 경찰청에서도 이에 대한 실무 매뉴얼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잘못된 경찰 장구 사용으로 신체에 불필요한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지 않도록 통일된 실무 매뉴얼 마련과 유치인 보호관 대상으로 지속적인 교육이 요구된다.

## 4) 유치장 경찰장구의 기록 관리 개선 필요성

경찰청 훈령인 「경찰관직무집행법에 의한 직무집행시의 보고절차 규칙」 제10조에서는 수갑, 포승 등 경찰장구를 사용한 때에는 근무일지에만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기재 사항에 대해서는 달리 규정하지 않고 있는데, 피진정인들이 작성한 유치인보호관 근무일지에 따르면, 경찰 장구를 사용한 기록이 일부 누락되어 있거나 대개의 경우 ‘수갑, 포승 사용’이라고만 간략하게 기재되어 있어 경찰 장구를 어떤 방법으로 사용하였는지, 특정 경찰 장구를 사용한 이유 등에 대하여 근무일지만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한편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1조에 의하면,

호송 이외의 사유로 보호장비를 사용하는 경우 보호장비 사용심사부에 기록을 유지하도록 하고 있고, 위 심사부에서는 보호장비의 종류, 방법, 사유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찰서 유치장의 경우에도 유치인의 자해, 위해 또는 손괴 등을 제지하기 위하여 경찰 장구를 사용한 경우에는 별도의 '유치장 경찰장구 사용심사부'를 마련하여 경찰장구를 사용한 이유, 장구의 종류 및 그 사용 방법 등에 대하여 상세하게 기재하여 경찰장구 사용의 자의적 남용을 억제할 필요성이 있다.

#### 라. 소결

○○경찰서나 ○○경찰서 이외에도 전국의 다른 경찰서에도 본 건과 같이 유치인의 소란, 난동 및 자해 위험이 상존하고 이를 막기 위하여 법령에서 정한 규격에 부합하지 않는 머리보호장비를 사용하거나 규정에 맞지 않게 수갑이나 포승을 하는 등 위에서 언급한 여러 가지 문제점을 공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경찰청장에게, 장구 사용 대상자에게 불필요한 신체적 고통이나 상해를 유발하지 않도록 보호유치실의 환경을 교도소 진정실 또는 보호실을 참고하여 개선하고,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87조, 제9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보다 안전하고 효과적인 유치장 보호장비를 구비하고, 수갑 및 포승이 변형된 방법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전국 유치인보호관 대상으로 수갑 및 포승의 올바른 사용법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아울러 경찰장구 사용의 자의적 남용을 억제하기 위하여 '유치장 경찰장구 사용심사부'를 마련할 것을 권고할 필요성이 있다.

한편, 이 사건 피진정인들이 규격에 맞지 않는 머리보호장비를 사용하거나 법령에 규정되지 아니한 방법으로 포승을 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법령에서 정한 규격에

부합하는 머리보호장비가 지급되지 않는 상황에서 머리를 이용하여 자해행위를 하는 유치인의 신체를 보호하기 위해 공여지책으로 시중의 헤드기어를 사용했던 점, 다른 보호장비가 없는 상황에서 달리 소란, 난동, 자해행위를 제지할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수갑과 포승에 과도하게 의존할 수 밖에 없었고, 포승의 구체적 사용방법에 대해서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진정인들에게 개인적인 책임을 묻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 8.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8. 5. 9.

위원장 정 상 환

위 원 장 애 순

위 원 조 현 욱

## 별지 1

피진정인

1. 전○○
2. 배○○
3. 박○○
4. 황○○
5. 강○○
6. 문○○
7. 배○○
8. 김○○
9. 최○○
10. 김○○

## 별지 2

### 관 련 규 정

#### 1. 헌법

제12조 ①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

제37조 ②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 2. 「경찰관직무집행법」

제10조(경찰장비의 사용 등) ① 경찰관은 직무수행 중 경찰장비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경찰장비(이하 이 조에서 “위해성 경찰장비” 한다)를 사용할 때에는 필요한 안전교육과 안전검사를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한다.

② 제1항 본문에서 “경찰장비”란 무기, 경찰장구(警察裝具), 최루제(催淚劑)와 그 발사장치, 살수차, 감식기구(鑑識機具), 해안 감시기구, 통신기기, 차량·선박·항공기 등 경찰이 직무를 수행할 때 필요한 장치와 기구를 말한다.

③ 경찰관은 경찰장비를 함부로 개조하거나 경찰장비에 임의의 장비를 부착하여 일반적인 사용법과 달리 사용함으로써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쳐서는 아니 된다.

④ 위해성 경찰장비는 필요한 최소한도에서 사용하여야 한다.

⑤ 경찰청장은 위해성 경찰장비를 새로 도입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여 그 안전성 검사의 결과보고서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안전성 검사에는 외부 전문가를 참여 시켜야 한다.

⑥ 위해성 경찰장비의 종류 및 그 사용기준, 안전교육·안전검사의 기준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의2(경찰장구의 사용) ① 경찰관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한도에서 경찰장구를 사용할 수 있다.

1. 현행범이나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범인의 체포 또는 도주 방지
2.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의 방어 및 보호
3. 공무집행에 대한 항거(抗拒) 제지

### 3. 「경찰관직무집행법에 의한 직무집행시의 보고절차 규칙」

제10조(장구사용의 보고) 경찰관은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찰장구를 사용한 때에는 근무일지에 기재하여야 한다. 그 중 전자충격기를 사용한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9호 서식에 의한 전자충격기 사용보고서를 작성하여 소속 경찰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소속 경찰관서의 장이나 지휘관의 지시에 의하여 사용한 경우에는 구두로 보고하는 방식으로 갈음할 수 있다.

### 4.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87조(유치장) 경찰관서에 설치된 유치장은 교정시설의 미결 수용실로 보아 이 법을 준용한다.

제98조(보호장비의 종류 및 사용요건) ① 보호 장비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갑, 2. 머리보호장비, 3. 발목보호장비, 4. 보호대(帶), 5. 보호의자, 6. 보호 침대, 7. 보호복, 8. 포승

### 5. 「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위해성 경찰장비의 종류) 「경찰관 직무집행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 단서에 따른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경찰장비(이하 “위해성 경찰장비”라 한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4.11.19.>

1. 경찰장구 : 수갑·포승(捕繩)·호송용포승·경찰봉·호신용경봉·전자충격기·방패 및 전자방패
2. 무기 : 권총·소총·기관총(기관단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산탄총·유탄 발사기·박격포·3인치포·함포·크레모아·수류탄·폭약류 및 도검
3. 분사기·최루탄 등 : 근접분사기·가스분사기·가스발사총(고무탄 발사검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최루탄(그 발사장치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4. 기타장비 : 가스차·살수차·특수진압차·물포·석궁·다목적발사기 및 도주 차량차단장비

제4조(영장집행 등에 따른 수갑 등의 사용기준) 경찰관(국가경찰공무원에 한한다. 이하 같다)은 체포·구속영장을 집행하거나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판결 또는 처분을 받은 자를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호송하거나 수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수갑·포승 또는 호송용 포승을 사용할 수 있다.

제5조(자살방지 등을 위한 수갑 등의 사용기준 및 사용보고) 경찰관은 범인·주취자 또는 정신착란자의 자살 또는 자해기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수갑·포승 또는 호송용 포승을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찰관은 소속 국가경찰관서의 장(경찰청장·해양경찰청장·지방경찰청장·지방해양경찰청장·경찰서장 또는 해양경찰서장 기타 경무관·총경·경정 또는 경감을 장으로 하는 국가경찰관서의 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 6. 「형의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0조(보호장비의 규격) ① 보호장비의 규격은 별표 5와 같다.

② 교도관은 제1항에 따른 보호장비 규격에 맞지 아니한 보호장비를 수용자에게 사용해서는 안된다

제171조(보호장비 사용 명령) 소장은 영 제120조제1항에 따라 보호장비 사용을 명령하거나 승인하는 경우에는 보호장비의 종류 및 사용방법을 구체적으로 지정하여야 하며,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보호장비를 사용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제179조(포승의 사용방법) ① 포승의 사용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고령자·환자 등 도주의 위험성이 크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수용자를 개별 호송하는 경우에는 별표 17의 방법(간이승)으로 할 수 있다.
2. 제1호의 수용자 외의 수용자를 호송하는 경우 또는 법 제97조 제1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18의 방법(상체승)으로 한다.
3. 법 제97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2호의 방법으로는 사용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면 별표 19의 방법(하체승)으로 한다. 이 경우 2개의 포승을 연결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제1항 제2호에 따라 포승을 사용하여 2명 이상의 수용자를 호송하는 경우에는 수용자 간에 포승을 연결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③ 개인포승은 일시적으로 사용하여야 하며, 계속하여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일반포승으로 교체하여야 한다.

제181조(보호장비 사용의 기록) 교도관은 법 제97조제1항에 따라 보호장비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보호장비사용 심사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97조제1항제1호에 따라 보호장비를 사용하거나 중경비시설 안에서 수

용자의 동행계호를 위하여 양손수갑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호송계획서나 수용기록부의 내용 등으로 그 기록을 갈음할 수 있다.

## 7. 「피의자유치 및 호송규칙」

제22조(수갑 등의 사용) ① 경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유치인 보호주무자의 허가를 받아 유치인에 대하여 수갑과 포승(이하 ‘수갑 등’이라 한다)을 사용할 수 있다. 다만, 허가를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때에는 사용 후 지체 없이 보고하여 사후승인을 얻어야 한다.

1. 송치, 출정 및 병원진료 등으로 유치장 외의 장소로 유치인을 호송하는 때와 조사 등으로 출감할 때
2. 도주하거나 도주하려고 하는 때
3. 자살 또는 자해하거나 하려고 하는 때
4.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하려고 하는 때
5. 유치장 등의 시설 또는 물건을 손괴하거나 하려고 하는 때

② 경찰관이 제1항제1호의 사유로 수갑 등을 사용하는 경우 구류선고 및 감치 명령을 받은 자와 고령자, 장애인, 임산부 및 환자 중 주거와 신분이 확실하고 도주의 우려가 없는 자에 대해서는 수갑 등을 채우지 아니한다.

③ 경찰관이 제1항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유로 수갑 등을 사용하는 때에는 그 사유와 시간을 근무일지에 기재하여야 하며, 사전에 해당 유치인에게 수갑 등의 사용사유를 고지하여야 한다.

④ 수갑 등은 그 사용목적의 달성을 위한 필요최소한의 범위에서 사용하여야 하고, 징벌이나 고통을 가할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수갑 등의 사용사유가 소멸한 때에는 지체 없이 해제하여야 한다.

⑥ 수갑 등을 사용하더라도 경찰관서 내에서 조사가 진행 중인 동안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제외하고는 수갑 등을 해제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라도 자살, 자해, 도주, 폭행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 되는 때에는 수갑 등을 해제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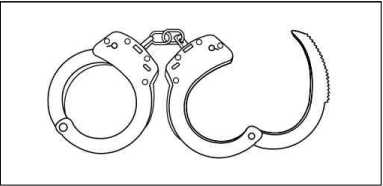
1.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죄를 범한 자
2.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2항의 죄를 범한 자
3. 자살, 자해, 도주, 폭행의 우려가 현저한 자로서 담당경찰관 및 유치인 보호 주무자가 수갑 등 사용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 별지 3

[별표 5] <개정 2013.4.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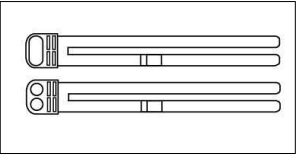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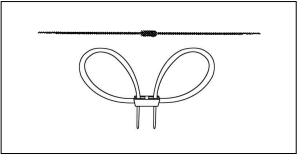
#### 보호장비의 규격(제170조제1항 관련)

1. 수갑
  - 가. 양손수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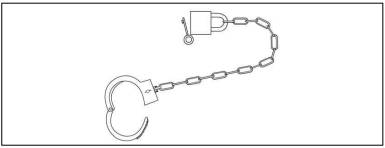
| 재 질                                                                                        | 잠 금 장 치      | 연결고리                 | 수갑을 채운 상태의 규격              | 최소사용 손목 크기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스테인리스스틸</li> <li>• 두랄루민</li> <li>• 탄소강</li> </ul> | 톱날 또는 물림홈 형태 | 길이 2.5cm의 고리규격 또는 경첩 | 최대: 20cm 이상<br>최소: 16cm 이상 | 지름: 5cm    |

- 나. 일회용수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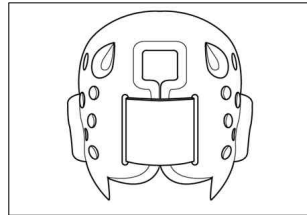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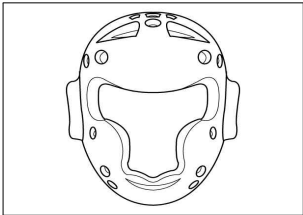
| 재 질     | 형 태               | 잠금장치                      | 규격                                              |
|---------|-------------------|---------------------------|-------------------------------------------------|
| 특수 플라스틱 | 좌우 동형 또는 상하 동형의 띠 | 가운데 홈으로 끝을 통과시키며 홈 안에서 조임 | (50cm ~ 88.5cm) × 1.3cm × 0.3cm<br>(길이, 넓이, 두께) |

- 다. 한손수갑



| 재 질                                                                                        | 형 태             | 연결고리                | 최소사용<br>손목 크기 | 구 성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스테인리스스틸</li> <li>• 두랄루민</li> <li>• 탄소강</li> </ul> | 툽날 또는 물림흡<br>형태 | 길이 80cm 미만의<br>고리규격 | 지름: 5cm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갑 1쪽</li> <li>• 연결고리</li> <li>• 자물쇠</li> </ul>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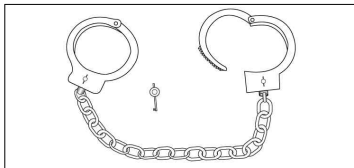
## 2. 머리보호장비



| 재 질             | 형 태 | 규 격                            | 색 상              | 구 성                                                                                        |
|-----------------|-----|--------------------------------|------------------|--------------------------------------------------------------------------------------------|
| 고무<br>또는<br>우레탄 | 헬멧  | 머리둘레: 55cm ~ 65cm<br>두께: 1.5cm | 베이지<br>또는<br>파란색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후두부 중앙 고정장치</li> <li>• 지름 1cm 미만의 환기구멍</li> </ul>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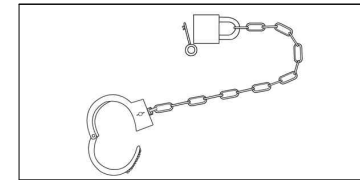
## 3. 발목보호장비

### 가. 양발목보호장비



| 재 질                                                                                        | 잠금장치            | 연결고리                | 수갑을 채운<br>상태의 규격           | 최소사용<br>발목 크기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스테인리스스틸</li> <li>• 두랄루민</li> <li>• 탄소강</li> </ul> | 툽날 또는 물림흡<br>형태 | 길이 35cm 미만의<br>고리규격 | 최대: 59cm 이상<br>최소: 53cm 이상 | 지름: 7cm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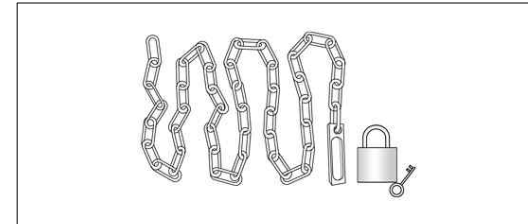
### 나. 한발목보호장비



| 재 질                | 잠금장치            | 연결부위                | 최소사용<br>발목 크기 | 구 성                                                                                      |
|--------------------|-----------------|---------------------|---------------|------------------------------------------------------------------------------------------|
| 스테인리스스틸<br>또는 두랄루민 | 툽날 또는 물림흡<br>형태 | 길이 80cm 미만의<br>고리규격 | 지름: 7cm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갑 1쪽</li> <li>• 연결고리</li> <li>• 자물쇠</li> </ul>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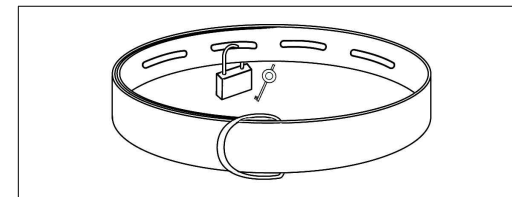
## 4. 보호대

### 가. 금속보호대



| 재 질     | 규격                   | 구 성                                                                           |
|---------|----------------------|-------------------------------------------------------------------------------|
| 스테인리스스틸 | 길이 150cm 미만의<br>고리규격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갑연결용 고리</li> <li>• 안전자물쇠</li> </ul>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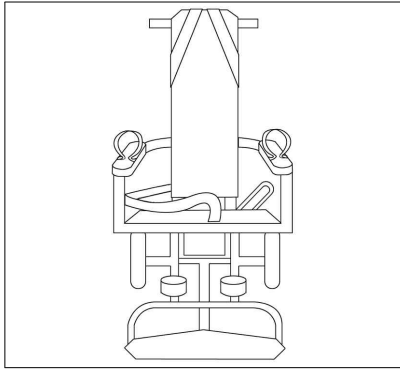
### 나. 벨트보호대



| 재 질 | 형 태 | 규 격 | 구 성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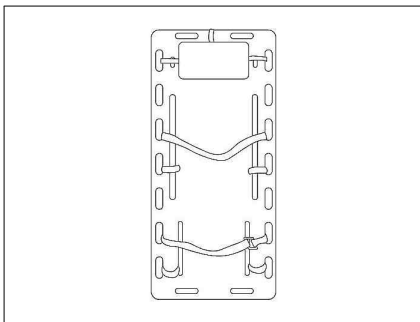
|                             |         |           |                                                                                                                   |
|-----------------------------|---------|-----------|-------------------------------------------------------------------------------------------------------------------|
| 벨트:<br>폴리프로필렌<br>링: 스테인리스스틸 | 벨크로접착 띠 | 140cm×5cm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벨크로접착 띠가 부착된<br/>중앙 분리형 벨트</li> <li>• D형 고리</li> <li>• 안전 자물쇠</li> </ul> |
|-----------------------------|---------|-----------|-------------------------------------------------------------------------------------------------------------------|

##### 5. 보호의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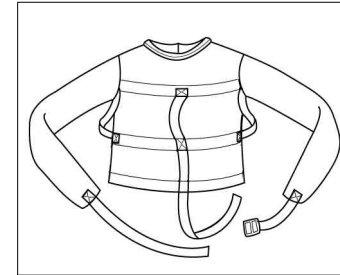
| 형 태                                 | 규 격                              | 중량   | 구 성                                                                                                                                                                                 |
|-------------------------------------|----------------------------------|------|-------------------------------------------------------------------------------------------------------------------------------------------------------------------------------------|
| 6개의 단방향조절식<br>잠금장치가 부착된<br>전신고정형 의자 | 70cm×117cm×112cm<br>(높이, 길이, 높이) | 32Kg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의자: 38cm×51cm (넓이, 깊이)</li> <li>• 등받이: 30cm×81cm (넓이, 높이)</li> <li>• 팔걸이: 9cm×43cm (넓이, 길이)</li> <li>• 어깨, 배, 다리, 팔 구속벨트 및 잠금장치</li> </ul> |

##### 6. 보호침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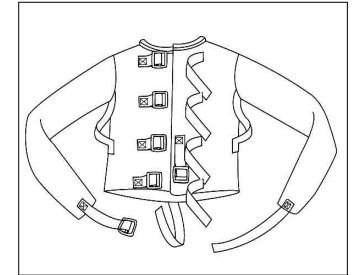


| 형 태 | 재 질                            | 규 격                          | 구 성                                                                                                    |
|-----|--------------------------------|------------------------------|--------------------------------------------------------------------------------------------------------|
| 보드형 | 보드: 접판식 합성목<br>재<br>벨트: 폴리프로필렌 | 81cm×190cm×5cm<br>가로, 세로, 두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드 1개</li> <li>• 6점점 구속벨트</li> <li>• 머리충격방지용 베개 1개</li> </ul> |

##### 7. 보호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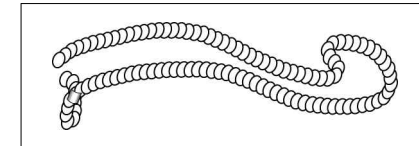
앞면



뒷면

| 형 태 | 재 질 | 규격(가슴둘레)                                  | 구 성                                                                                                                                                     |
|-----|-----|-------------------------------------------|---------------------------------------------------------------------------------------------------------------------------------------------------------|
| 재킷형 | 면   | 대: (109~124)<br>중: (94~114)<br>소: (81~99)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버클 6개: 등판 왼쪽 4개, 등판 오른쪽 아<br/>래 1개, 왼쪽 소매 끝 1개</li> <li>• 나일론 버클 조임끈 6개</li> <li>• 목부위 마찰방지 바이어스 처리</li> </ul> |

##### 8. 포승



| 종 류 | 재 질 | 길이(m) | 지름(cm) |
|-----|-----|-------|--------|
| 일반용 | 면   | 11    | 0.7    |
| 개인용 | 면   | 7     | 0.3    |

